

#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현황 및 문제점\*

정 훈\*\*

##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토양에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율현황
- III. 폐기물과 오염토양 혹은 토양오염의 관계
- IV. 결론 -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

## [국문초록]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토양에 귀속되어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의 일부가 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과 토양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대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토양오염이 반드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토양오염물질 외의 다른 물질도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물질 중 하나가 폐기물임은 규범적 정의를 떠나서 자연적 기초사실에 비추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폐기물은 토양오염물질이고 폐기물의 투기는 토양을

\* 본 논문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으로 2012년 7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0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오염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판례는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토양은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는 대상이고 정화의 대상이지 그 자체 폐기물은 아니며 폐기되거나 투기되는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자와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자가 실질에 있어서 근접해 있는데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명령과 명령위반시 가해지는 제재도 커다란 차이가 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법정형은 폐기물관리법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는데, 이러한 현행법의 실정에서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판례 입장은 형벌의 형평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양환경보전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일정한 행위가 폐기물투기가 될 수도 있고 토양오염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법정형이 낮은 토양오염행위로만 본다면 법정형이 높은 폐기물법을 적용할 때보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법의 내용 중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은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균형과 비례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I. 문제의 제기

폐기물은 자원으로 환원될 경우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유지되어 환경보존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활용할 수 없어서 처리해야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궁극적으로 토양에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폐기물을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토양에 매립할 경우 토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투기한다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처럼 폐기물이 궁극적으로 토양에 귀속되어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의 일부가 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과 토양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대해 각각 별개의 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한국의 법체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즉, 두 법은 폐기물의 부적

정 처리나 토양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토양에 유출하는 행위 등에 각각 형사처벌 등 제재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이나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토양에 버려진 폐기물, 혹은 토양과 하나가 된 폐기물의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의 정의를 있는데, 만일 어떤 폐기물이 토양오염물질이 된다면 이것을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토양오염물질로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인지. 다음으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을 토양에 무단투기하거나 불법매립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부적정처리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제재를 하고 폐기물처리명령 등을 발할 것인지, 아니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하고 토양정화명령을 내릴 것인지. 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의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들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는 오염원인자의 하나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현실에서 가령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소유한 자는 토양오염원인자로서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은 져야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인식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대처나 토양환경보전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전의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폐기물과 토양의 관계를 직접 대비시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중에 최근에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구별과 이에 대한 법적인 처리에 대해 심도 있는 논문이 발표되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sup>1)</sup> 이 논문이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과 오염토양의 처리책임에 천착한 것이라면 필자의 연구는 폐기물과 토양의 관계가 상호밀접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율하는 법이 다른데서 오는 문제점에서 출발

1) 박종원,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환경법과 정책』 제8권 2012. 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하여 법체계의 조화를 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접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규정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과 토양의 관계를 고찰한 후 두 영역의 조화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Ⅱ. 토양에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율현황

### 1. 토양오염의 원인물질과 폐기물의 관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토양오염에 대해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토양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토양오염의 정의에서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토양오염물질의 정의에서는 토양오염이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용어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토양오염은 반드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양오염물질은 법문의 표현상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만을 말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 외의 다른 물질도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폐기물이 아닌가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에 대해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물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비해<sup>2)</sup>,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사람

2) 법률의 위임에 의해 환경부령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2관련 별표1은 21종의 토양오염물질

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폐기물의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토양오염이 반드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의 개념은 넓게 정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폐기물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폐기물과 토양오염물질이 중첩되는 경우에 적용법률을 어느 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범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토양오염행위가 되는지, 나아가 관할 행정청은<sup>3)</sup> 누가 되며, 또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양정화명령을 할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현실이 폐기물과 토양오염물질 혹은 폐기물 투기와 토양오염행위 나아가 폐기물과 오염토양을 별개로 보아 각각 다른 법률에서 규율한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 2. 폐기물처리와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

### (1)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sup>4)</sup>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sup>5)</sup>을 위

---

을 열거하고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라고 하여 고시로 오염물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열거보다는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물질은 결국 21종과 유사한 물질이 될 것이어서 제한적 예시에 해당할 것이다.

3) 이러한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관할의 문제(사무분장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된 경우에 일정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조치명령대상자로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17조 제1항 제3호<sup>6)</sup>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자는 타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그 토지에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다.

## (2)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은 토양오염원인자에 대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동 제1항은 제5조 제4항 제2호의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라고 하고 있을 뿐, 그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 제10조의4의 규정이 일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 제10조의4는 사법적 피해배상을 위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어서 공법상 조치명령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궁극적으로 토양오염의 원인행위 혹은 행위자는 사범영역이나 공범영역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의 대상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이다.

### (3) 문제되는 영역

#### (가) 폐기물 부적정처리와 토양오염물질 누출 등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조치명령의 하나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나 불법매립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을 들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10조의4에 의한 조치명령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기물을 토양오염물질의 일종으로 본다면 폐기물의 무단투기나 불법적 매립과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시키거나 투기 등을 하는 행위는 하나의 현상을 두 개의 다른 법률의 각도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 실질은 같은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입법현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명령을 하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을 선택해야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모순·저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나) 토지소유자 등의 책임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 소유자'를 조치명령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오염원인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법 제 2조 제3호에 의하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두 법의 규정으로부터 규율대상물질은 '폐기물'과 '토양오염물질'이고, 이 물질들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인 토지에 버려지거나 오염을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청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청구조와 폐기물이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나 토양오염물질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 토지소유자나 해석에 따라서는 모두 대청되는 상대방의 법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 3. 벌칙규정

#### (1) 폐기물투기와 토양오염물질투기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염토양의 폐기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이에 대해서는 후술), 설령 달리 본다 하더라도 오염토양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사업장 폐기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법정형의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에 맞지 않는 감이 있고, 나아가 이러한 형벌의 큰 차이로 인해 폐기물로 볼 것인지 오염토양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행위자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는 토양환경보전대책지역에서 폐기물을 토양에 버려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9조는 이러한 오염물질제거명령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각하는 경우나 환경보전대책지역에 폐기물을 버린 결과 토양을 오염시킨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같게 되어 있고, 더구나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토양환경보전대책지역에 폐기물을 투기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법정형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폐기물과 토양오염물질 혹은 오염토양을 달리 취급한 데서 오는 부조화로 보인다.

## (2) 조치명령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5조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등 이른바 오염원인자가 제15조에서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와 같은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폐기물투기와 토양오염물질 혹은 오염토양의 투기에서 보듯이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는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이 폐기물인 경우 행위의 태양이 동일할 것임에도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두 법의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폐기물과 오염토양 혹은 토양오염의 관계

#### 1. 폐기물과 오염토양의 정의

##### (1)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2) 오염토양의 정의

『토양환경보전법』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오염토양’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동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의 한 절차로 동 제3항에서는 오염도 조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오염토양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기준’이란 동 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에 의하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는 별표3에서 우려기준을 계량화하고 있다.

[별표 3] (개정 2011.10.6)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이상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이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물질이 일정한 수치를 넘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오염토양의 정의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과 오염의 정도가 수치화 되어 있어서 일단 매우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토양환경보전법이 ‘오염토양’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오염토양의 외연을 넓게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토양환경보전에 힘쓰고자 함은 아닌가 하는

7) 오염토양에 대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즉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등의 실시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결국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으로부터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박종원, 앞의 논문, 112쪽)

생각에 미치면, 이처럼 오염토양을 좁고 한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토양환경보호에 철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토양오염'의 정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무튼 폐기물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폐산이나 폐알카리 및 지정폐기물 등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 나아가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토양은 다시 폐기물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바, 여기에서 폐기물과 오염토양의 명확한 관계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3)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관계

우리 판례는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sup>8)</sup>고 하고 있다.

위 판례는 토양과 폐기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토양은 폐기물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 폐기물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의 개념요소로 ‘동산’, ‘물질’을 들고 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 판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를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사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sup>9)</sup>고 하여 오니의 폐기물성을 인정하였는데, ‘오니’의 폐기물성을 인정하면서 ‘오염토양’의 폐기물성을 부인하는 것은 당해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자연상태에서 물질의 성질상,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개념요소로 ‘물질’, ‘물건’, ‘동산’을 드는 독일의 폐기

8)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물법계에서는<sup>10)</sup> 토지와 부착된 것은 토지의 구성부분일뿐 동산이 아니므로 토양의 일부분인 오염토양 그 자체는 폐기물이 아니지만, 만일 토양과 분리된 '오염토양'은 폐기물이 될 수 있다. 즉, "폐기물법에서는 언제나 '부착의 견고성' 정도 또는 부착된 물건의 '분리가능성'이 중요한 것이며<sup>11)</sup>, 그에 따라 어떤 물건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는지 여부만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한다<sup>12)</sup>. 예컨대 폐허가 된 주택은 철거가 된 경우에 비로소 폐기물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유해한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오염된 부분을 파내어 분리해 냄으로써 폐기물이 된다<sup>13)</sup>. 독일 폐기물법상 이러한 물건에 대한 개념정의가 갖는 의미는 효율적이면서, 가능한 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sup>14)</sup>."<sup>15)</sup>

10) 종래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 KrWG)' 제3조 제1항은 폐기물의 정의를 "모든 동산(alle beweglichen Sachen)"이라고 했으나, 최근 개정된 2012년 2월 24일 시행의 법률에서는 "모든 물질 또는 물건(alle Stoffe oder Gegenstände)"이라고 하여 '동산'이라는 표현 대신 '물질 또는 물건'이라고 바꿨다. 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물건 속에 동산이 포함되므로 개정 법률이 종전 법률에 비해 폐기물의 개념 정의를 전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3 Begriffsbestimmungen (1) Abfäll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alle Stoffe oder Gegenstände, derer sich ihr Besitzer entledigt, entledigen will oder entledigen muss. Abfälle zur Verwertung sind Abfälle, die verwertet werden; Abfälle, die nicht verwertet werden, sind Abfälle zur Beseitigung. 독일연방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krwg/gesamt.pdf>) 최종방문일시: 2012년 11월 27일 14:23

11) Kersting, Die Abgrenzung zwischen Abfall und Wirtschaftsgut, 36쪽; Kettler/Kippels, Umweltrecht, München 1988, 164쪽

12) Altenmüller, Zum Begriff "Abfall" im Recht der Abfallbeseitigung, DÖV 1978, 27(29); Franßen, Abfallrecht, in: Grundzüge des Umweltrechts, Berlin 1982 409쪽; Hösel/von Lersner, AbfG, § 1 Rn. 5

13) Schink, DVBl. 1985, 1150(1151)쪽; Altenmüller, DÖV 1978, 27(29); Fuchs, Abfallbegriff und Abfallbeförderung, GewArch 1984, 217; OVG Lüneburg, NuR 90, 180; VGH Mannheim, Beschluß vom 14. Dezember 1989 - I S 2719/89, NVwZ 1990, 781; BGH Urteil vom 4. Juli 1991 - IV Str 179/91, NJW 1992, 123

14) BT - Drs. 7/4826, 3, 6 및 35쪽

15) 상세한 내용은, 정 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년, 22쪽 이하

독일의 폐기물법제에서는 오염된 토양은 오염부분을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면 폐기물로 보는데 반해 우리 관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례에 따른다면, 가령 오염토양을 다른 곳에 버릴 경우, 이것을 '폐기물투기'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토양오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로 '폐기물투기'와 '토양오염'의 개념 혹은 관계가 문제된다.

## 2. 폐기물투기와 토양오염의 정의

### (1) 폐기물투기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투기에 대해 동 제8조의 표제를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이라 하여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투기'란 폐기물처리가 허용된 곳 외에 버리거나 허용된 곳 외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가 토양오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 (2)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토양오염을 정의하기를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 제2호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이에 의거하여『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별표1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을 열거하고 있다.<sup>16)</sup>

그런데, 이상의 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엄밀히 말하면, 토양오염의 태양만 기술할 뿐 제대로 된 정의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정의에 의하면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어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염의 '원인'과 '결과'만 나열할 뿐 '오염'자체의 정의는 없다. 그렇다면 오염이란 무엇인가?

우선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오염(汚染)은 “더럽게 물들 또는 더럽게 물들게 함”<sup>17)</sup>이라고 하고 있다. 즉 더러운 상태(汚)가 되도록 물들이는(染)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토양오염에서 토양을 더럽게 물들이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은 더럽히는 원인과 더럽혀짐의 결과는 기술되었지만, 과연 더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럽히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비단 토양오염만의 문제는 아니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는 '환경오염'에 대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역시 환경오염의 원인과 태양, 그리고 결과를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환경오염에 대해 OEC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오염이란 인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환경에 물질(substance)이나 에너지를 투입(introduction)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생물자원(living resources)과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고, 환경의 쾌적함(amenities) 기타 환경의 정당한 이용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해로운 효과를 야기하는 것”<sup>18)</sup>.

16)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17)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7748100>)

18) “pollution means the introduction by man, directly or indirectly, of substances or energy into the environment resulting in deleterious effects of such a nature as to endanger human health harm living resources and ecosystems, and impair or interfere with amenities and other legitimate uses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나 OECD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는 오염의 '원인'과 오염의 '태양', 그리고 오염의 '결과'가 기술되어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의 정의를 하면서 '원인'과 '결과'만 기술한 것 보다는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역시 '오염'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념정의의 불명확함은 여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는 오염원인자의 하나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하는 행위를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폐기물투기와 토양오염의 관계

정의의 불명확함은 있지만, 아무튼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을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정의는 이 법의 규율대상과 상대방에 대한 행위제한의 한계를 획정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정의는 명시적으로는 토양이 더럽혀진 "상태"를 말하고 있을 뿐 토양오염'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토양오염과 폐기물투기를 직접 대비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오염이라는 상태가 발생하고, 나아가 동법상 정의를 보아도 오염의 원인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정적인 의미와 동적인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폐기물투기와 토양오염을 동일한 지평에 놓고 논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 혹은 동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는 제1호에서 '토양오염'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제2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f the environmen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concerning Transfrontier Pollution 14th November 1974 - C(74)224; 환경부, 『OECD 환경제규정(영문판)』, 1997년, 241쪽 (<http://webbook.me.go.kr/DLi-File/020/029897.pdf>)

이 두 정의규정을 앞뒤로 연결해서 조합하면 얼핏 토양오염이 토양오염물질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 제11조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토양오염은 토양오염물질 외에 기타의 사유로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법 제21조 제1항은 토양보전대책지역에서 폐기물 등을 토양에 버리는 것을 금하면서, 동 제3항에서는 폐기물 등을 버려서 토양이 오염된 경우 행위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폐기물이 토양오염물질의 하나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관례도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이라 하여 토양오염의 원인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한정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9)</sup>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이나 관례의 입장에서부터 폐기물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폐기물의 투기나 부적정처리가 토양오염의 원인 혹은 오염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폐기물 중에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고, 이러한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투기와 토양오염의 관계 혹은 폐기물과 오염토양의 관계는 그 명확한 경계 획정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각각 별개의 법률이 존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위제한,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에 특정한 행위가 폐기물투기인지 토양오염행위인지, 혹은 특정 물질이 폐기물인지 오염토양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적용과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면, 명확성의 원칙 및 법의 체계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19)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IV. 결론 -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제정의 역사나 배경이 다르고 토양에 대한 정책이나 폐기물에 대한 정책방향이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고정되고 자연히 존재하는 토양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산출된 폐기물은 인간의 관심 방향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방향이냐 대응책도 다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법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물질이고 폐기물투기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토양은 폐기물이나 폐수 등에 의해 오염당하는 대상이고, 폐기물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지라도 오염원인물질과는 무관하게 오염된 토양으로 존재할 뿐 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폐기물을 '발생'이나 '처리', '투기', '오염원' 등의 동적인 측면으로 보는 반면 토양은 '오염', '정화상태' 등 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시각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적절한 처리나 재활용 등이 주된 관심이고, 토양에 대해서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나 피해의 배상 등이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식도 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토양과 폐기물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상호 연관성 속에서 입법이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의 모든 것은 결국 토양으로 귀속되므로 귀속되는 물질을 토양과 따로 떼어서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아닌가 한다. 한국은 폐기물과 토양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폐기물과 오염토양 또는 토양오염물질을 따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조치나 규제도 각각 달리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오염토양은 폐기물이 아니라 정화대상일 뿐이라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은 토양오염물질의 하나이고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며,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토양이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경우 이것을 폐기물로 보아야 오염된 토양으로 보고 정화할 때 보다 더 친환경적인 토양환경이 보전될 것이다. 실제로 폐기물이 토양에 매립된 경우 토양과 전혀 섞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토양과 완전히 혼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 상태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폐기물로 볼 것인지, 혹은 오염토양으로 볼 것인지는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토양환경

보전에 더 적합한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 법의 벌칙규정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오염토양으로 볼 경우 법정형이 더 가벼워서 행위자는 토양오염의 방지에 더 소홀히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 중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가령, 폐기물의 개념과 오염토양이나 토양오염물질의 개념, 양 법에서 규정하는 방지조치명령, 오염원인자나 조치명령대상자 등의 규정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해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양 법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고려해 볼 일이 아닌가 한다.

## 참고문헌

- 박종원,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환경법과 정책』 제8권  
2012. 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정 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년
- 환경부, 『OECD 환경제규정(영문판)』, 1997년
- Fuchs, Abfallbegriff und Abfallbeförderung, GewArch 1984, 217
- Hösel/von Lersner, AbfG, 1992
- Altenmüller, Zum Begriff "Abfall" im Recht der Abfallbeseitigung, DÖV 1978, 27
- Franßen, Abfallrecht, in: Grundzüge des Umweltrechts, Berlin 1982 409
- Kersting, Die Abgrenzung zwischen Abfall und Wirtschaftsgut, Düsseldorf 1992
- Kettler/Kippels, Umweltrecht, München 1988
- Schink, Abfallrechtliche Probleme der Sanierung von Altlasten, DVBl. 1985, 1150

**[Abstract]**

**The Present and Problem of the Current Law on the Waste Control an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Jeong, Hoon

(Associate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Wastes finally return to soil, whether disposal(incineration, landfill, recycling or any way) or dumping or whatever, and then it is the cause of soil contamination. In that sense, waste and soil are closely connected. Korean law on waste and soil, however, is divided into 'Waste Control Act' an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ach. The difficult problems of this legislation is as follows. For exemple, there would be problems, such as when a dumping waste(or contaminated soil) on soil causes soil contamination, what kind of administrative measure must be issued;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under Waste Control Act or Order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oil Contamination und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this connection,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contaminated soil is not waste. To solve these problems, both law on waste and soil are revised fo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주 제 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투기,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오염토양  
**Key Words** Waste, Waste Control Act, Dumping Wastes, Soil Contaminatio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taminated Soil